

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

구 미 시

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

제출년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가. 2022년도분 지방채 발행 ⇨ 7,000백만원

- 1)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: 3,000
- 2)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 : 2,000
- 3) 오태공원 조성사업 : 2,000

2. 제안 이유

가. 문화체육관광국

1) 문화예술과

가)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(2022) : 3,000백만원

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,
시립민속관을 이전하여 시민들의 향토문화체험 공간 조성

나. 환경교통국

1) 공원녹지과

가)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(2022) : 2,000백만원

- (1)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문성리 지역에 산림공원을 조성하여
가족 중심의 친환경 여가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
- (2)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
장기간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
신속한 보상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등 예방

나) 오태공원 조성사업(2022) : 2,000백만원

- (1) 기 조성된 왕산기념관 주변에 독립을 주제로 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왕산허위선생을 비롯한 구미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추모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
- (2)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민이용도, 도시개발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우선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
- (3) 보상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등 예방

3. 발행 개요

☐ 2022년 지방채 발행

○ 세부내역

(단위:억원)

부서명	사업명	신청액	소관	비고
계	2개 부서, 신청 3건	70		
문화예술과	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	30	기획행정위	
공원녹지과	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	20	산업건설위	기발행 40억원
	오태공원 조성사업	20		

4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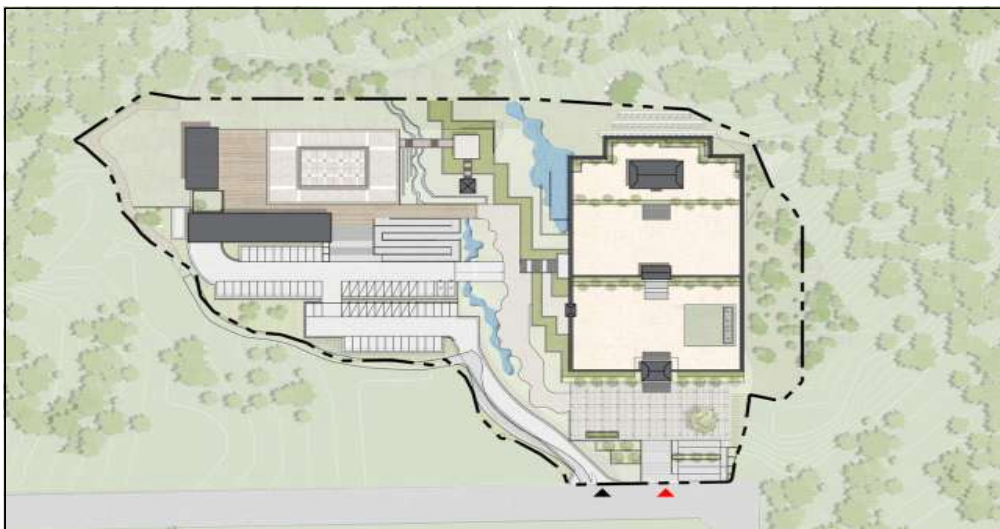
□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

- 기 간 : 2019 ~ 2023년
- 위 치 : 구미시 인의동 115번지 일원
- 내 용 : 동헌 재현 및 시립민속관 이전 건립 등
- 사 업 비 : 120억원(도 45 시 75)
- 기대효과 :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충족
- 공 정 율 : 5%

<천생역사문화공원 위치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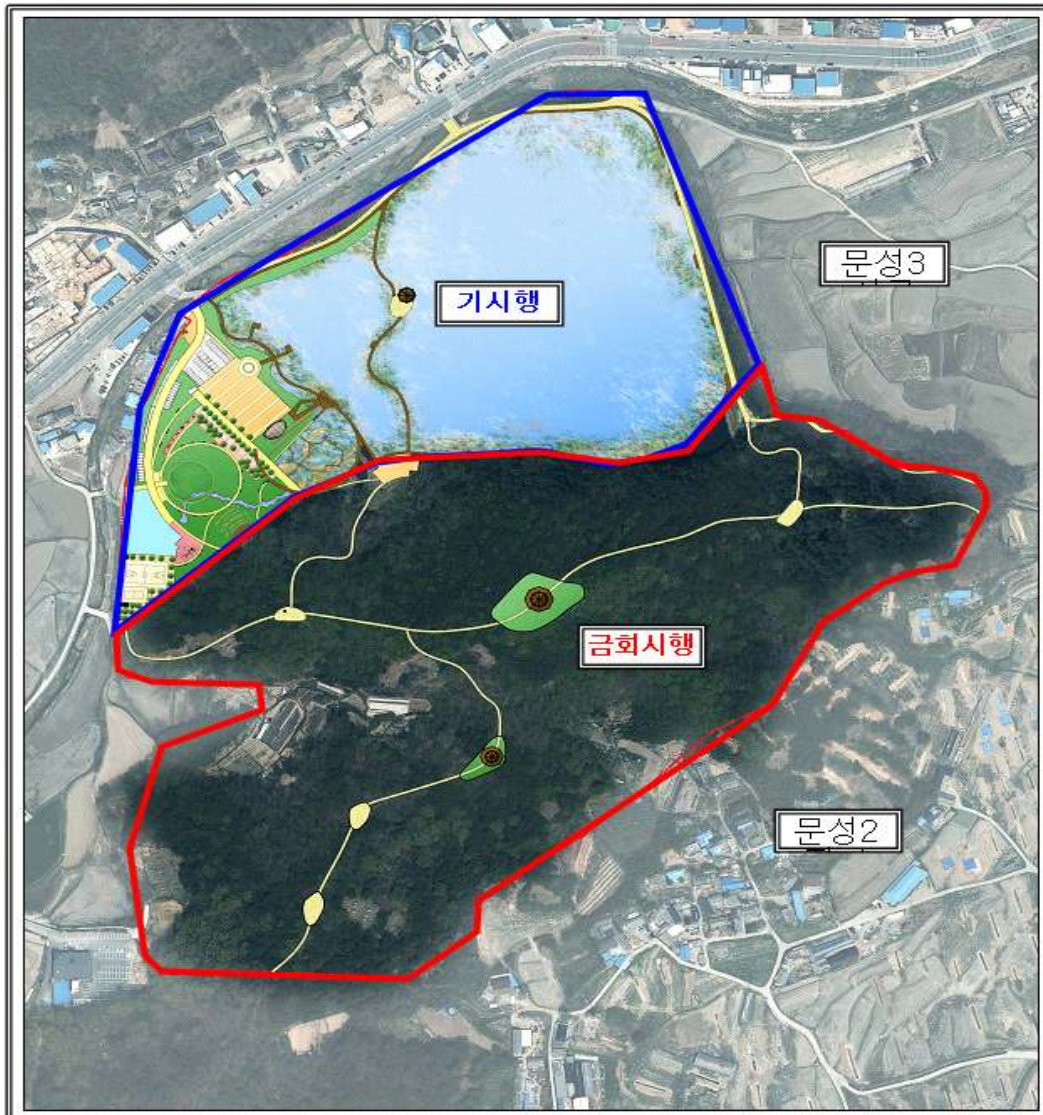
<천생역사문화공원 위치도>



□ 들성산립공원 조성사업

- 기 간 : 2019 ~ 2024년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산46번지 일원(면적 170,498m²)
- 내 용 : 산림체험로, 모험놀이터, 전망대, 광장 조성 등
- 사 업 비 : 91억원(도 19.5 시 71.5) ※ 보상비 60억원(지방채발행)
- 기대효과 : 친환경 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여가 공간 제공
- 공 정 율 : 보상진행 중

<들성산립공원 조성 계획도>



□ 오테공원 조성사업

- 기 간 : 2020 ~ 2025년 / 6년간
- 위 치 :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일원(면적 220,433㎡)
- 내 용 : 보훈의 정원, 의병 체험 놀이터, 왕산의 광장 조성 등
- 사 업 비 : 96억원 ※ 보상비 70억원(지방채발행)
- 기대효과 :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환경복지 혜택 증가
- 공 정 율 : 보상계획 공고

<오테공원 조성 계획도>



5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제1항 및 제2항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제1항

다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항

라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5. 5. 13.>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
2~6호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4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~⑤항 생략

소관부서	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과 장	박 영 일
	담 당	정 윤 호
	담 당 자	박 정 훈 (480-6516)